

□ KREI 인권경영 체크리스트

분야	항목	점검결과	비고
인권경영 체제의 구축	① 기관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 선언을 했다.	○	
	② 기관은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.	△	내부규정에 따름
	③ 기관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.	○	
	④ 기관은 인권경영 성과를 추적하고 기록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.	△	
	⑤ 기관은 인권경영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.	○	
	⑥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.	○	
고용상의 차별	① 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, 종교, 장애, 나이, 사회적 신분,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	○	
	② 기관은 근로자를 고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.	○	
	③ 기관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하지 않는다.	○	
	④ 기관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않는다.	○	
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	① 기관은 근로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인정한다.	○	
	② 기관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.	○	
	③ 기관은 근로자 대표에게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.	○	
	④ 기관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기관은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노동 관련 문제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조치를 제공한다.	-	해당 사항없음
강제노동의 금지	① 기관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.	○	
	② 기관은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를 포함하여, 직원들의 신분증명서, 여행문서 등 다른 중요한 개인문서를 보관하지 않는다.	○	
	③ 기관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사무소나 협력기관에서 강제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.	○	
아동노동의 금지	① 기관은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.	○	
	②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, 즉시 고용을 중지시키기 보다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다른 구제조치를 취한다.	○	
	③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강이나 안전, 도덕의식에 해로운 일을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.	○	
산업안전보장	① 기관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.	○	
	② 임산부, 장애인 기타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.	○	
	③ 기관은 근로자들에게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	○	

	④ 기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·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.	○	
	⑤ 기관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한다.	○	
책임있는 공 급망 관리	① 기관은 공급업자, 하청업자,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 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.	△	해당 사 항 없음
	② 기관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, 하청업자,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한다.	△	
	③ 기관은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.	○	
현지 주민의 인권보호	① 기관은 토지 소유주를 비롯하여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받은 당사자와 협의한다.	-	해당 사 항 없음
	② 기관은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가담하거나 이주를 해야하는 주민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기지 않으며,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.	-	
	③ 지역의 예술적인 작품 또는 판권을 낼만한 물질이나 특허를 취득하지 않은 발명품을 현지주민이나 현지주민들이 이미 사용한 바 있을 때, 이를 사용하기 전에 기관은 그 작품의 발명가나 소유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동의를 얻는다.	-	
환경권 보장	① 기관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.	-	해당 사 항 없음
	② 기관은 환경정보를 공개한다.	-	
	③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.	-	
	④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.	-	
소비자 인권 보호	① 기관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, 건강,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, 제조, 표시를 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.	-	해당 사 항 없음
	② 기관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상품을 조속히 회수한다.	-	
	③ 기관은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회사가 수집, 저장하는 개인 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	○	